

# 일본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 현황과 과제\*

정수원\*\*  
suwon@gdsu.dongseo.ac.kr

## <目次>

- |                   |                         |
|-------------------|-------------------------|
| 1. 서론             | 4. 일본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 실태 연구 |
| 2. 일본 소규모기업의 지원제도 | 5. 결론 및 향후과제            |
| 3. 일본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 |                         |

主題語: 소규모기업(Small Business), 수출(Export), 공제제도(Mutual Benifit), 경제위기(Economic crisis), 폐업(Closure of business)

## 1. 서론

일본경제는 지금까지 급격한 엔고현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또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 동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로 인해 국내 제조업은 부품공급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외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기업과 소규모기업<sup>1)</sup>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인원을 감축하고 있으며,<sup>2)</sup> 소규모기업은 매출감소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대기업이나 중기업보다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기준 일본 소규모기업의 규모는 기업 전체에서 87%에 해당하는 366만 5천사에 달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21%에 해당하는 912만명이다. 지금까지 소규모기업은 지역의 기술

\* 본 연구는 2012년도 동서대학교 '동서프론티어과제'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1) 일본의 소규모기업이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기업이나 도·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은 5인을 의미한다.
- 2) 일본 산케이뉴스(2012년 11월 11일자)에 의하면, 2012년에 파나소닉은 본사종업원 7,000명중에서 3,000~4,000명을 감축하기로 발표하였다. NEC는 국내외 종업원 5,000명을 감축하고, 사프도 국내외 종업원 5,000명을 감축하기로 발표했다.

과 자원, 그리고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발신지로서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93년 5월에 시행된 일본의 「소규모사업지원촉진법」은 소규모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개인기업의 경영에 대한 상담과 지도사업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폭넓은 경영개선 보급사업과 소규모사업자의 사업공동화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을 펼쳐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본경제·사회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기업 전체의 99.7%인 중기업과 소규모기업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sup>3)</sup>

일본은 소규모기업 육성을 위해 오래전부터 경영지원 및 금융지원을 해왔다. 경영지원으로는 경영개선 및 상담지원을 하였고, 금융지원으로는 경영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소규모기업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창업보다 폐업<sup>4)</sup>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규모기업이 도산 및 폐업을 하더라도 경영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 일본 정부는 1965년부터 소규모기업이 폐업을 했을 경우 생활안정자금과 사업재건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상공인<sup>5)</sup>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상호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소상공업의 폐업과 경영자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200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과 발전을 위한 선행연구는 중소기업중앙회(2002)가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국회산업자원위원회(2006)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후 정수원(2012)의 「우리나라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로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45년 이상 공제제도의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소규모기업 공제제도에 대한 실태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소상공인 공제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일본의 중소기업(소규모기업 포함)은 전체 약 421만사중에 99.7%인 약 420만사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규모는 4,297만명 중에 66%인 2,834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4) 소규모기업정책연구회(2007) 「소규모기업의 재구조」에 의하면, 소규모기업의 감소는 1996년 448만사에서 2001년에는 410만사, 2004년에는 378만사로 8년간 약 15%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과 같이 주로 가내 수공업으로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과 제조업, 광업, 건설업과 같이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에 해당한다.

## 2. 일본 소규모기업의 지원제도

### 2.1 지원기관과 자금지원

#### 2.2.1 상공회 설립과 역할

일본경제가 발전하는데 대기업, 중기업, 소규모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기업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기업 발전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상공회<sup>6)</sup>를 설치하여 창업, 세무, 금융, 경리,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상공회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도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1961년 7월 1일 상공회법 시행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 1,739개의 상공회가 설립되었다. 상공회는 상공회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지역상공업자의 친목과 교류, 상부상조, 공통적인 경영문제 등을 위하여 지역 상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자주적인 임의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 2.2.2 자금지원제도

소규모기업이 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이상 동일 지역내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 있는 경영지도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경영지도를 받고 상공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대출을 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1,500만엔으로 되어 있으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7년까지이고, 설비자금은 10년까지이다. 이자율은 2010년 9월을 기준으로 연1.95%로 되어 있다. 자금대출은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의 심사를 거친 후에 추천을 받은 자에게 국민생활금융공고(國民生活金融公庫)에서 소규모사업자나 신규창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한다. 한편 경영지도원은 소규모기업 경영자나 신규창업자에 대해 지도 및 조사를 한 후에 그 내용을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소규모기업이 생산성 향상 등의 경영기반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를 수행할 경우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신용 및 자금조달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설비도입을 희망하더라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은 소규모기업의 경영기반의 강화에 필요한

6) 상공회는 상공회법에 따라 경제산업성의 중소기업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町)과 촌(村)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소규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와는 별도의 단체로 운영 되고 있다.

설비도입 촉진을 목적으로 소규모기업 설비자금 지원제도를 설치하여 설비자금 대출사업 및 설비리스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본 제도는 1999년까지 실시하고 있던 중소기업 근대화 자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하였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설비도입자금 조성법에 의해 2000년도부터 새로이 실시하는 제도이다.

소규모사업자의 설비자금 대출은 소요자금의 1/2인 범위내에서 4,000만엔 이하까지 대출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은 7년까지로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다. 대출조건은 연대보증인과 물적담보를 필요로 하며, 설비도입 리스사업은 설비리스 자금으로 8,000만엔을 연4.5%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대여 신청수속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대출기관에 신청을 하고 서류조사 및 기업진단,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대출을 결정한다.

## 2.2 경영지원제도

### 2.2.1 경영개선 보급사업

소규모사업자는 경영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시책으로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시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부정리, 금융, 세무 등 일상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에서는 경영지도원을 두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의 개별상담과 지도를 하며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중소기업진단사를 초빙하여 지도와 상담을 하고 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수요구조의 변화, 기술혁신의 진전에 의한 경영자원의 고도화, 소규모사업자가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전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상담과 지도중심의 체제에서 지역진흥사업 실시와 전문지도 체제의 확충, 정보제공 체제의 정비, 후원자육성 등 다면적인 체제로 개별상담사 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종합적인 경영개선 보급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영개선 보급사업은 경영지도원을 통하여 소규모사업자에게 지도 및 개별상담을 하고, 세무회(稅務會)와 협력하여 세무에 관한 지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규모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일체적으로 할 필요성과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혁신에 의해 경영자원이 고도화됨에 따라 소규모사업자도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전개 할 필요가 있다.

### 2.2.2 지도센터운영과 기장(記帳)지도

소규모기업의 경영과 기술개선 향상을 위해 경영지도원을 두고 소규모기업에게 경영상담 및 지도를 하고 있다. 경영지도원은 소규모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금융, 세무, 노동, 경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상세하게 상담을 통하여 지도한다. 또한 최근 업종별 문제, 광역적 문제, 전문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광역지도센터 및 전문지도센터를 정비하고, 두 곳의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촉탁전문지도원을 배치하고 있다. 광역지도센터는 도도부현(都道府縣)상공회에 두고 있으며 전문지도센터는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소규모기업은 경영과 가계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업으로서 최소 필요한 기장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장은 소규모기업 대책으로서 시행하는 금융 및 세제(稅制)에 있어 기초일 뿐만 아니라 소규모기업의 경영개선점으로 볼 때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전부터 기업기장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기장전임직원과 기장지도원을 배치하여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기장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 기장업무 대행도 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기업의 기장합리화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기장에 대한 기계화도 추진하고 있다.

## 3. 일본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

### 3.1 공제제도의 운영

일본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1959년부터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소규모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폐업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제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따라서 1965년에 폐업 및 생활안정자금 또는 사업재건자금으로서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는 소규모기업은 경영기반이 빈약하고 경영이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폐업이나 전업 또는 경영자 사망 등에 대비하여 소규모 사업자간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운영은 ‘중소기업종합사업단’이 일본정부로부터 출자금 및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종합사업단’이 ‘지역진흥정비공단’ 및 ‘산업기반정비기금’의 업무를 통합하

여 2004년 7월 1일에 독립행정법인인 일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日本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sup>7)</sup>)를 새롭게 탄생시켜 공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sup>8)</sup> 공제제도 실시를 위한 법률 개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표 3-1>과 같이 공제제도 발족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제도의 신설과 납부금 변동 등이 이루어졌다.

<표 3-1> 공제제도 법률 개정 및 주요 내용

소규모기업 공제제도 법률	주요 내용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법 제정 (1965년 6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舊) 제2종공제제도 발족</li> </ul>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법 개정 (1967년 7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구(舊) 제1종공제제도 창설</li> <li>■ 납부금 승계 상속제도 도입</li> </ul>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법 개정 (1972년 6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금 최고 한도액 인상(5,000엔에서 10,000엔으로)</li> <li>■ 계약자 일반대출제도 개설(일반대출)</li> </ul>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법 개정 (1977년 5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금 최고 한도액 인상(10,000엔에서 30,000엔으로) 및 최저 한도액 인상(500엔에서 1,000엔으로)</li> <li>■ 고령자 지급 인상(납부금 월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li> </ul>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법 개정 (1982년 5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금액 최고 한도액 인상(30,000엔에서 50,000엔으로)</li> <li>■ 공제금 수급에 필요한 납부금 월수 단축(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li> <li>■ 공제계약 해약 수속 간소화</li> <li>■ 계약자 대출제도 창설(부상, 재해 대출)</li> </ul>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법 개정 (1989년 6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금 최고 한도액 인상(50,000엔에서 70,000엔으로)</li> <li>■ 공제금 분할지급제도 도입</li> <li>■ 공제자산 생명보험에 의한 운용 개시</li> </ul>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법 개정 (1995년 3월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금 및 해약수수료 인하</li> <li>■ 공제금 및 해약수수료 계산방법 변경</li> <li>■ 분할공제금 분할지급률 인하</li> <li>■ 계약자 대출제도 확대(창업·전업 대출)</li> <li>■ 이전 제2종공제제도 폐지 및 신규가입 중지</li> </ul>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법 개정 (1998년 12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금 및 해약수수료 인하</li> <li>■ 분할공제금 분할지급률 인하</li> <li>■ 계약자 대출제도 확대(신규사업 대출)</li> <li>■ 공제금 지급방법 추가</li> </ul>

7) 독립행정법인 ‘일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日本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는 중소기업경영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상담, 연수, 자금대출, 출자, 채무보증, 지역시설정비, 공제제도 등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8) 정수원(2012)「우리나라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한국창업학회지』제7권 제1호, p.206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법 개정 (2003년 6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금 및 해약수수료 인하</li> <li>■ 분할공제금 분할지급률 인하</li> <li>■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의무화</li> <li>■ 계약자 대출제도 확대(긴급경영 대출)</li> </ul>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법 개정 (2010년 4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격 확대(공동경영자 가입)</li> <li>■ 공제계약 해약사유 수정</li> <li>■ 계약자 대출제도 확대(사업승계 대출)</li> </ul>

자료 : 일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日本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2012년 홈페이지 참조 필자 재작성.

### 3.2 공제제도의 개관

#### 3.2.1 공제제도 가입자격과 현황

납입한 공제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전액이 소규모기업 공제납입금공제로서 소득공제가 되며, 공제금의 수령은 ‘일괄수령’, ‘분할수령’ 또는 ‘일괄수령과 분할수령’으로 할 수 있는 병행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퇴직소득취급 공제금은 퇴직소득(일괄수령) 또는 공적연금 등 잡소득(분할수령)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정 자격을 가진 가입자는 납입한 총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등으로 담보나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sup>9)</sup>

공제제도 가입자격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20인 이하인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업, 농업, 제조업의 개입사업자 및 회사 임원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하인 상업(도·소매업), 서비스업의 개인사업자 및 회사 임원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업종사자인 경우(단 공동경영자로서 요건을 갖춘 자는 가능)와 협동조합, 의료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등 직접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원은 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sup>10)</sup> 가입자의 공제납입금은 매월 1,000~70,000엔(500엔 단위)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금은 세법상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납입금은 향후 공제금으로 충당된다.

일본의 공제제도 가입현황을 보면,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건수는 200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후 국내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가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가 2010년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가입자는 103,388건으로 전년도

9) 지진, 태풍,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 급여소득자가 부업으로 아파트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기업의 임원(상담역, 고문)이라도 등기부등본에 임원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생명보험회사 외판원도 가입자격이 없다.

보다 10,083건이 증가하였다. 또한 경영악화와 폐업으로 인한 해약건수는 2000년대 초반에 상당히 많았으나 2004년부터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년 해약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해약자수의 증가는 총 재적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2001년 이후 재적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공제제도 가입현황

단위 : 사

년도	가입건수	해약건수	재적건수
2001년	75,858	148,280	1,920,092
2002년	76,502	144,749	1,851,845
2003년	77,870	149,066	1,780,649
2004년	81,552	120,347	1,741,854
2005년	91,052	112,299	1,720,607
2006년	92,961	111,332	1,702,236
2007년	91,730	112,419	1,681,547
2008년	82,093	128,004	1,635,636
2009년	80,785	125,408	1,591,013
2010년	93,305	109,849	1,574,469
2011년	103,388	105,642	1,572,215

자료 : 일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日本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2012년 홈페이지 참조 필자 재작성.

### 3.2.2 공제금 납입과 지급현황

공제금 납입은 예금계좌이체로 되어 있으며, 납입방법은 월납입, 반년납입, 1년납입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납입금은 매월 1,000엔에서 70,000엔으로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나 기업경영의 악화, 질병 또는 부상, 위급한 비용지출, 매출감소나 지출증가로 인해 사업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만 납입금을 감액 할 수 있다.

공제제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개인사업자가 스스로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납입함으로써 폐업 및 퇴직을 하였을 경우 많은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제금의 지급은 공제가입자의 사유에 따라 공제사유<sup>11)</sup>, 공제사유B<sup>12)</sup>, 준공제사유<sup>13)</sup>로 구성되어 있다. 공제사유A가 지급을

이 가장 높으며, 준공제사유가 가장 낮다. 이러한 차이는 공제사유A가 공제사유B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도산과 관계없이 임원이 사전에 퇴직을 준비하였을 경우 기업이 존속하고 있어 별도의 퇴직금을 일부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임원의 퇴직은 사업장 폐지와 비교하여 임의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약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질병과 부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임원이 필요하거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어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규 창업이나 전업 후에 공제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가 있는 계약자에 한해서 납입한 전체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제금에 대한 지급현황을 보면,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기업의 도산 증가와 임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2004년 이후에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해약금액은 2000년대 초반에 상당히 많았으나 2004년 이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3> 공제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공제금(공제금A·공제금B)		해약금(준공제금·해약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년	53,470	447,004	28,839	65,156
2002년	53,774	464,459	27,233	64,627
2003년	58,795	533,501	25,593	64,300
2004년	51,289	486,992	17,769	43,225
2005년	49,788	506,515	15,295	40,708
2006년	50,322	523,810	14,509	40,545
2007년	51,590	544,687	14,017	40,905
2008년	55,040	596,152	15,730	46,635
2009년	55,286	599,074	14,968	45,865
2010년	50,148	556,503	13,508	41,763
2011년	50,099	571,853	12,100	39,630

자료 : 일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日本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2012년 홈페이지 참조 필자 재작성.

- 11) 공제사유A는 개업사업의 폐업(사망포함), 회사의 해산 등으로 인한 임원의 퇴직에 해당한다.
- 12) 공제사유B는 회사임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퇴직(사망포함), 고령자 지급(65세 이상)으로 가입년수가 1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 13) 준공제사유는 회사의 조직변경(임원이 안된 경우) 및 배우자 또는 자식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회사임원의 임의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 3.2.3 공제자산의 운용

소규모기업의 공제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소규모기업 공제계약자에 대해서 장래에 공제금지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공제자산의 운용은 공제제도 설립부터 원금보증채권, 확정이자채권, 정기예금 등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예정 이율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1987년에 단독운용지정금전신탁, 1989년에 특정금전신탁을 자산의 운용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소규모기업의 공제자산에 대한 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 3-4>와 같이 기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운용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하고 있다. 국내의 주식시장 저조와 엔고에 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11년 자산운용 총금액은 7조 7,849억엔으로 국내채권의 경우 기본 포트폴리오보다 0.6%가 적은 5조 4,188억엔을 운용하였고, 다음이 기본 포트폴리오보다 0.1%가 많은 국내채권에 4,233억엔을 운용하였다.

공제자산 운용실적을 보면, 2011년 동일본(東日本)대지진 및 유럽과 미국의 채무문제,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 각 국가 중앙은행의 금융완화정책실시와 유럽경제 불안 감소가 엔화시장에 영향을 주어 공제자산 운용에 이익이 발생하였다. 2011년의 운용이익은 1.62%로 지난 7년간(2005년에서 2011년까지) 평균치인 1.3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의 운용자산은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시장환경의 악화로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한 손실은 자가운용자산보다 위탁운용자산<sup>14)</sup>에서 발생하여 현재는 80%를 자가운용자산으로 공제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표 3-4> 기본 포트폴리오 및 운용자산

단위 : 억엔, %

운용자산	국내 채권	단기자산	융자 대출금	국내 주식	국내 채권	외국 주식	외국 채권	생보 자산
자산배분	70.2	2.0	6.0	4.8	5.3	4.8	3.4	3.5
2011년 투자자산	54,188	2,162	3,991	3,741	4,233	3,732	2,750	3,053
자산구성비	69.6	2.8	5.1	4.8	5.4	4.8	3.5	3.9
기본P와 차	-0.6	0.8	-0.9	0.0	0.1	0.0	0.1	0.4

주 : 기본 포트폴리오(P)는 2009년 8월 개정 수치임.

자료 : 일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日本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2012년 홈페이지 참조 필자 재작성.

14) 자가운용자산은 만기보유 목적인 국내채권, 생명보험자산, 융자경리대출, 단기자산으로 운용하고, 위탁 운용자산은 신탁은행 및 투자자문회사에 위탁하여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운용하고 있다.

## 4. 일본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 실태 연구

### 4.1 연구 목적

일본 소규모기업은 대다수가 영세자영업자인 생계형기업으로서 열악한 상태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소규모기업의 부도, 기업주의 사망, 재해, 노령 등으로 인한 폐업은 일본경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다. 일본기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노후 생활안정과 기업경영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소규모기업은 일본 전체 기업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충족과 지역의 특산품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기업은 경영자의 노력에 의한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소규모기업간에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규모기업 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소규모기업 경영자의 공제제도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본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일본 도쿄도(東京都) 네리마구(練馬区)와 신쥬쿠구(新宿区)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3월초부터 10월말까지 연구에 필요한 항목들을 정리하여 소규모기업을 방문하여 경영자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전체 198사이며, 설문지는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설문지 전체를 연구에 활용 할 수 있었다.

### 4.3 공제제도 조사의 개요

#### 4.3.1 성별 · 연령 · 최종학력 · 창업년도

이번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비율에 있어서는 남자가

전체 조사자의 61.6%인 122사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는 76사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령대는 60대가 75사로 가장 많고, 50대가 45사, 30대가 31사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많아 70대 이상이 24사로 나타나 있다. 소규모기업 경영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98사로 제일 많으며, 다음이 대학교 졸업자로 81사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연도는 1970년 이전부터 창업을 한 기업이 61사로 제일 많으며, 1970년대가 39사, 2000년대가 30사순서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에 창업한 소규모기업은 14사이다.

<표 4-1> 연령 · 성별 · 창업년도

단위 : 사

사업자 성별	남			여		
	122			76		
사업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3	20	31	45	75	24
최종학력	초등학교졸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대학교졸
	3		16	98		81
창업년도	70년대 이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
	61	39	28	26	30	14

### 4.3.2 업종별 분포

조사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소매업이 103사로 제일 많으며, 다음이 서비스업으로 45사, 제조업이 18사, 요식업과 기타가 각각 14사로 나타났다.

<표 4-2> 조사기업 업종

단위:사

조사항목	응답기업	조사항목	응답기업
건설업	4	제조업	18
도·소매업	103	서비스업	45
요식업	14	기타	14

주 : 조사기업의 업종 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요청 거절이나 일부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편중현상이 나타났으며, 기타는 숙박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이다.

### 4.3.3 경영자의 근무시간 및 업종 선택

소규모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하루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기업의 경영자는 하루에 10시간 근무하는 경영자는 117사로 제일 많고, 8시간이 25사, 12시간이 24사로 나타났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영자도 22사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근에 소규모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업주의 건강문제라고 볼 수 있다. 소규모기업은 사업주가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건강이 소규모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규모기업의 경우 장시간 근무로 인하여 경영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경제는 1990년부터 발생한 버블경제의 붕괴와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20년 이상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어 폐업하는 소규모기업이 매년 속출하고 있다. 조사 대상기업의 현재 업종선택을 보면,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의 기술 활용이 가능하여 자영업을 한 경영자가 107사로 제일 많으며, 적은 창업자본 및 종업원에 의해 창업이 가능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44사로 나타났다. 위 조사 결과를 볼 때 창업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업종선택 이유

단위 : 사

조사항목	응답기업	조사항목	응답기업
본인의 기술 활용이 가능	107	입지조건이 업종과 일치	28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44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어	31
적은 종업원으로 창업이 가능	44	기타	10

주 : 복수응답.

### 4.3.4 현재 경영의 문제점과 2세 승계

소규모기업의 경영은 대기업과 다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 <표 4-4>는 조사대상 기업이 소규모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동업

종 및 타업종간에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113사로 제일 많다. 다음으로 점포 및 설비의 노후를 응답한 기업이 36사. 기업을 경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33사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기업이 현재 사업을 2세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승계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54사이고, 승계하지 않겠다고 144사로 나타나 조사기업의 약 73%가 현재 사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소규모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일본의 소규모기업은 첫째,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장래가 불투명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업종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둘째, 현재 사업에 대해서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2세가 경영하는 것을 기피한다. 셋째, 오랜 불경기로 인하여 현재 소규모기업 경영에 지쳐있으며, 매년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넷째, 노동에 비교하여 수입이 낮으며, 소규모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본인 세대에서 마치고 싶어 하는<sup>15)</sup> 문제로 인하여 현재 경영하고 있는 소규모기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4-4> 경영의 문제점과 2세 승계

단위 : 사

조사항목	응답기업	조사항목	응답기업
자금 부족	33	점포 및 설비의 노후	36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	14	경쟁이 치열함	113
입지조건이 좋지 않음	31	종업원관리가 어려움	18
승계합	54	승계안함	144

주 : 복수응답. 2개의 조사항목을 1개의 표로 작성하였음.

## 4.4 공제제도운영의 실태 조사

### 4.4.1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 인지 및 가입 유무

일본은 1965년부터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제도를 시행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회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조사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15) 정수원(2008) 「일본 소규모기업의 경영실태와 발전방안」 『일본근대학연구』제21집, p.262

여부에 대한 질문은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공제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7사이고, 공제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사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 기업이 공제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제도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가입하고 있다는 기업이 36사이고,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기업이 162사로 나타났다. 또한 공제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107사중에서 가입을 원하는 기업이 36사이고, 가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이 71사로 나타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공제제도 가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공제제도 인지 및 가입 유무

단위 : 사

조사항목	응답기업	조사항목	응답기업
공제제도를 알고 있다	107	공제제도를 모르고 있다	91
가입하고 있다	36	가입을 안하고 있다	162

주 : 2개의 조사항목을 1개의 표로 작성하였음.

#### 4.4.2 공제제도를 알게 된 경위

일본의 (재)중소기업기본정비기구에서는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기업 공제제도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조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조합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90사로 제일 많다. 다음이 신문광고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15사, TV광고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각각 동일하게 7사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로 볼 때 신규회원 모집에 있어서 소규모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업종별 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회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나타났다.

<표 4-6> 공제제도 인지 매체

단위 : 사

조사항목	응답기업	조사항목	응답기업
신문광고	15	지인소개	7
TV광고	7	기타(조합포함)	90

주 : 복수응답.

#### 4.4.3 공제제도 가입금액

일본 소규모기업의 공제금은 소규모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경영자의 사망, 폐업, 자금조달 등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로서 소규모기업의 형편에 맞추어 가입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기업의 가입금액을 보면,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36사중에서 매달 5,000엔 이상 10,000엔 미만이 14사로 제일 많으며, 다음이 10,000엔 이상 20,000엔 미만이 13사로 나타났으며, 50,000 이상 기업도 4사로 나타났다.

<표 4-7> 공제제도 가입 금액

단위 : 사

조사항목	응답기업	조사항목	응답기업
5,000엔 이상	14	30,000엔 이상	2
10,000엔 이상	13	40,000엔 이상	0
20,000엔 이상	3	50,000엔 이상	4

#### 4.4.4 공제제도 가입의 필요성과 가입의사

공제제도에 대해서는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01사는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97사중에서 향후 가입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한 기업은 19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78사는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여 공제제도 가입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4-8> 공제제도의 필요성과 가입의사

단위:사

조사항목	응답기업	조사항목	응답기업
필요하다	97	필요가 없다	101
가입의사가 있다	19	가입의사가 없다	78

주 : 2개의 조사항목을 1개의 표로 작성하였음.

#### 4.4.5 공제제도가 불필요한 이유

위의 <표 4-8>에서 51%에 해당하는 101사가 공제제도에 대해서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는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이 53사, 기타가 40사, 예상보다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한 기업이 31사, 가입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한 기업이 19사로 나타났다. 일본은 소규모기업의 공제회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공제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공제제도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공제제도가 불필요 한 이유

단위 : 사

조사항목	응답기업	조사항목	응답기업
잘 모르기 때문에	53	예상보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31
가입비용이 부담되어	19	기타	40

주 : 복수응답.

### 4.5 우리나라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일반 현황

#### 4.5.1 우리나라 공제제도 가입 현황

우리나라 국회산업자원위원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sup>16)</sup>에 의하면, 공제제도의 도입은 일반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제도,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의 혜택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혜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안정된 기업경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시대에 있어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공제제도는 복지후생 측면과 함께 보험적인 성격과 저축성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평소에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게 함으로써 가입자에게는 적립에 대한 수혜혜택을 주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사회보장 제도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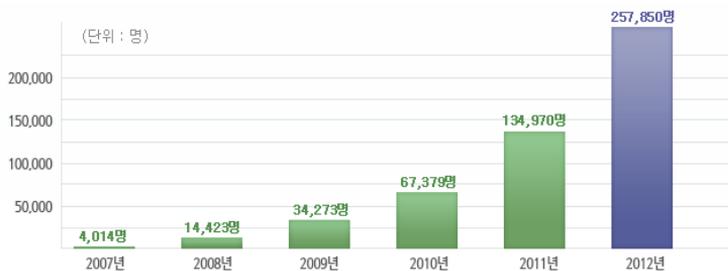
우리나라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은 소상공인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사회적·경제

16) 국회산업자원위원회(2006)「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p.11

적 손실을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이 상호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매월 부금을 납부함으로써 도산과 폐업, 그리고 사업자의 노령에 대비하여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1990년 당시 상공부에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대한 도입 건의가 효시라고 하겠다. 그 이후 2003년에 중소기업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도입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2006년에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2006년 3월에 소기업·소상공인은 생계형 사업자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퇴직금제도가 없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은퇴할 경우 대안을 갖지 못하여 공제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위해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다음 연도인 200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2009년 12월에는 가입제한 요건을 폐지하였고, 2010년 1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납입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영구화하였다.

지금까지 공제제도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입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없었다. 국회산업자원위원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sup>17)</sup>에 의하면 공제제도 도입 1년차에는 5,828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2년차에는 4배 이상인 25,068명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4년차에는 57,665명을 모집하고, 5년차에는 67,689명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는 공제제도를 실시하여 소상공인 공제제도의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년도인 2007년에 4,014명을 모집하였고, 2년차인 2008년에는 14,423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5년차인 2011년에는 67,592명을 모집하여 추정치인 67,689명과 비슷하였다. 공제제도 도입 이후 5년간 누계 가입자 수도 131,863명을 추정하였으나 실제로 134,970명을 모집하여 목표치를 상회하였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그림 4-1> 공제제도 가입자 현황

17) 국회산업자원위원회(2006)「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p.31

한편 6년차의 추정치는 169,699명으로 되어 있으나 2012년 12월말 현재 257,850명을 돌파하여 가입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한다면 회원확보에는 당분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4.5.2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우리나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지방으로 이관되었고, 현재는 다시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지금까지 10년 이상 여러 기관에서 지원과 관리과정을 거치면서도 산과 폐업, 재해, 노령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제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는 초기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진흥원이 유력하였으나 현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재원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의 많은 운영비 지원과 출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은 1965년 시행 이후 10년간 출자비용으로 13억 4억1천만엔을 지원하였고, 사업비 보조금으로 38억3천만엔을 지원했다.<sup>18)</sup> 따라서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공제제도 가입자에게 연금저축외에도 추가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향후 소상공인 공제제도 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과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 4.5.3 신규 회원모집 활동의 다양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라고 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제제도 가입 회원확보를 위해 일부 일간지나 TV광고, 전단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공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은 소규모기업 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상공회를 통해 공제제도를 알리고 회원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을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회원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각 지역의 재래시장번영회 및 상가와 협조하여

18) 국회산업자원위원회(2006)「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p.20

소상공인들의 공제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 신규 회원모집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각 금융기관과 협조 및 공동으로 신규모집에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sup>19)</sup>과 협약하여 은행에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단체(상공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단체중앙회, 사업협동조합 등)와 금융기관(계약은행, 신탁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상공조합중앙금고의 본점과 지점)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조 및 공동으로 신규 회원모집에 노력해야 한다.

#### 4.3.4 가입자현황 및 자산운용의 공개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가입자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정확한 공제금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일본의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소규모기업 공제법과 경제산업성령(經濟産業省令)에 정해져있는 운용 기본방침<sup>20)</sup>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자산운용을 위해 운용위원회설치와 자산운용현황공개, 자산운용의 평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위의 <표 3-2> <표 3-3> <표 3-4>와 같이 공제제도 가입현황, 공제금 지급현황, 기본 포트폴리오 및 운용자산을 통해 연도별 가입자 수와 해약자 수, 그리고 공제금지급에 대한 건수와 금액, 수익률 등을 공개하고 있어 가입예정자가 안심하고 공제제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림 4-1>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가입자 수는 공개하고 있으나 해약자 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산의 투자운용에 있어서도 투자금액 운용은 <표 4-10>와 같이 공개하고 있으나 수익률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가입예정자에게 불신감을 주고 있어 회원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공제자산운용에 있어 자가운용자산보다 위탁운용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현재는 80%를 자가운용자산으로 공제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제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19) 자동이체 가능 은행은 기업, 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외환,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등이다. 전국에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우체국은 포함이 안되어 있다.

20) 자산운용 기본방침은 소규모기업공제 운용의 기본적인 방향, 운용자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운용수탁기관에 대한 사항, 운용업무에 관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표 4-10> 운용자산 투자현황

단위: 억엔, %

구분	금액	비중	비고(예금종별)
채권	8,317	81.5	국채, 금융채, 회사채 등
단기상품	1,362	13.4	MMT, 정기예금 등
주식관련상품	400	3.9	원금보장형ELS
대체투자(부동산)	122	1.2	
합계	10,201	100	

주 : 2012년 12월말 기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4.5.5 계약자 대출의 범위 확대

공제제도 가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2호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계약약관에 의해 재해, 부상, 질병, 전업, 창업, 복지, 경영안정, 사업계승 등으로 인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자격은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이거나 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로서 대출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일본은 가입자에게 일반대출, 질병·부상·재해대출, 창업전업대출, 복지대응대출, 긴급경영안정대출, 사업계승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신규 가입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일본과 같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자금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자금대출에 대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

#### 4.5.6 정부자금 우선 대출과 선납 감액제도

우리나라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년 많은 금액을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 규모는 2012년의 경우 5,050억으로 우선정책자금으로 2,746억원, 정책자금으로 2,304억원을 책정하여 대출하였다. 대출 금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3.55%로 시중은행보다 낮게 하였으며, 대출 기간도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회원에게는 자금지원 대한 우선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공제회원 관리 및 납부금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부금을 선납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감액제도의 실시와 공제대금을 연체한 가입자에게는 연체대금 부과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소상공

인 공제제도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본은 소규모기업이 공제금을 납부하는데 있어 선납하는 경우에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선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4.5.7 가입금액의 탄력적 운영

현재 우리나라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가입금액은 최저 5만원부터 70만원까지로 1만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기업경영 악화로 인하여 공제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업경영의 악화, 질병 또는 부상, 위급한 비용지출, 매출감소나 지출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입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21)</sup>

우리나라도 공제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관리 차원에서 탄력적인 납부금 감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자의 경영이 최악인 경우. 둘째, 가입자의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 셋째, 급한 비용발생이 발생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인정한 경우. 넷째, 매출감소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 4.5.8 가입자격의 확대 방안

2012년 시점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은 7년째를 맞이하였으며, 예상 추정치보다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공제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안정적인 회원 확보와 유지를 위해 임원과 공동경영자도 가입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기업 구성원이 안심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으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 확대가 필요하다.<sup>22)</sup>

## 5. 결론 및 향후과제

오늘날 경제·사회의 변화로 경영과제의 고도화, 전문화, 국제화, 신규사업진출, 사업승계

21) 일본은 불경기로 인하여 기업경영이 어렵거나 위급한 비용의 발생, 매출감소, 지출증가, 질병 및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월 1,000엔까지 감액하여 납입할 수가 있다.

22) 일본은 소규모기업 공제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원도 가입자격이 있으며, 2011년 1월부터는 공동경영자도 2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등은 지역과 도시간의 경쟁격화를 가져오고 있어 소규모사업에 관련된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소규모기업은 경제·사회의 기반을 지지하고 있는 기업집단으로서 지역사회에 밀착된 활동을 통한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장기간에 걸친 불황으로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중기업, 특히 소규모기업의 경영환경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대기업 및 중기업간의 격차, 소규모기업간의 치열한 경쟁 등 이러한 문제의 발생 배경에는 순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의 글로벌화와 고령화문제,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일본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소규모기업이 일본경제 전체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경기 후퇴기에서 확장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표면화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은 일부 소규모기업은 아직 공제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기업이 많아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제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제일 많으며, 다음이 예상보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은 회원확보를 위해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상공회, 신문광고, TV광고 등을 이용하여 공제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제도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소규모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업종별 조합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소상공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나 기관을 통해 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도 최근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쉽게 창업하고 쉽게 폐업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업의 폐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위의 연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과 동일하게 아직도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자영업자가 많아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부도,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을 하거나 고령화로 퇴직하는 경우에 대비한 소상공인 공제제도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은 위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신규 회원모집 활동의 다양화, 가입자현황 및 자산운용의 공개, 계약자 대출의 범위 확대, 가입금액의 탄력적 운영, 가입자격의 확대 방안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나가야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기업을 연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조사대상 기업이 일본의 일부 소규모기업에 해당한다는 점과 도쿄도(東京都) 네리마구(練馬区)와 신주쿠구(新宿区)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일본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 실패가 일본 전체의 소규모기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공제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에 대해서도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연구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행연구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향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參考文獻】

- 국회산업자원위원회(2006)「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자료 전체  
 중소기업중앙회(2002)「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방안」보고서자료 전체  
 중소기업중앙회(2013) 홈페이지  
 정수원(2001)「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생산성증요도에 대한 고찰」『생산성논집』제15권 제2호, pp.33-48  
 \_\_\_\_\_(2002)「일본의 소규모기업 경영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대한경영학회』제15권 제3호, pp.177-196  
 \_\_\_\_\_(2002)「부산의 소상공인 특성과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동서대논문집』제7집, pp.511-524  
 \_\_\_\_\_(2005)「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실태 연구」『대한경영학회』제16권 제7호, pp.2257-2276  
 \_\_\_\_\_(2006)「일본의 소규모기업 경영지원정책에 대한 연구」『한국창업학회지』제1권 제2호, pp.21-40  
 \_\_\_\_\_(2008)「일본 소규모기업의 경영실태와 발전 방안」『일본근대학연구』제21집, pp.245-267  
 \_\_\_\_\_(2009)「일본 소규모기업의 창업과 폐업실태에 관한 연구」『한국창업학회지』제2제4권 제4호, pp.43-70  
 \_\_\_\_\_(2012)「우리나라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한국창업학회지』제7권 제1호, pp.197-218  
 日本商工会議所(1995)「小規模事業者支援促進法の要覽」  
 日本中小企業総合事業団(1999)「小規模企業共済」  
 日本中小企業総合事業団(1999)「中小企業報告書」  
 日本中小企業庁(1999)「小規模事業對策の重点」  
 日本中小企業庁(2004)「中小企業支援制度」  
 小規模企業政策研究会(2007)「小規模企業の再構築」  
 東京商工リサーチ(2007)「中小企業の経営実態調査」  
 東京商工リサーチ(2008)『2007年全國企業倒産白書』  
 日本中小企業庁(2012)「ホームページ」  
 日本中小企業庁(2012)『日本中小企業白書』  
 日本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2013)「ホームページ」

---

논문투고일 : 2013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20일

---

〈要旨〉

일본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 현황과 과제

2009년 기준 일본 소규모기업의 규모는 기업 전체에서 87%에 해당하는 366.5만사에 달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21%에 해당하는 912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규모기업은 지역의 기술과 자원, 그리고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발신지로서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본 소규모기업은 대다수가 영세자영업자인 생계형기업으로서 열악한 상태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소규모기업의 부도, 사망, 재해, 노령 등으로 인한 폐업은 일본경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다. 일본기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노후 생활안정과 기업경영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규모기업은 경영자의 노력에 의한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소규모기업간에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규모기업 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소규모기업 경영자의 공제제도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본 소규모기업의 공제제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The Status and challenges for Japanese small business mutual aid system

In 2009, Japanese small business scale is reaching 366.5 ten thousand which account for 87% of whole companies and workers are accounting for 912 ten thousand which conform to 21%. Until today, small business worked as dispatch which create local's technology, resources and recruit opportunities and have been an important role of local economy's development by sticking into local society. Most of Japanese small businesses are living companies which are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y operate their companies in poor environment.

Small businesses' closure by bankruptcy, owner,s death and disease and aging population becomes a root of serious problem in Japanese economy's general sight. For small businesses CEOs who account for absolute importance of Japanese companies, we need measures of insurance for aged and complement the failure of companies. So, small businesses should establish the self reliance base by CEO's effort and need to operate effectively of small businesses mutual aid system that helps system which mutually helps among small companies to be possible. In this study, we recognized status of the Japanese small businesses' CEO's mutual aid system. We think the study of Japanese small business mutual aid system has a lot of things of implying to our country's operating system called small business mutual aid system's development. So, we studied this subject with a purpose of promoting our country's small business mutual aid system's vitalization.

